

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7] <개정 2024. 5. 21.>

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(제1조의2제17항 관련)

연번	납입대상	납입금액
1	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	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(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
2	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	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(4천50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
3	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	119억원
4	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	119억원
5	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	119억원
6	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	119억원
7	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	119억원

비고

1. "연번"이란 대통령령 제3093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로 한다.
2. "납입금액"이란 중미경제통합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.